의 안 번 호

1361

【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5. 31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6. 1.(목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6. 9.(금)

# 2. 제안이유

국가정책사업인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내 필요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"615명"에서 "620명"으로 5명 증원, 집행기관 의 정원을 "598명"에서 "603명"으로 5명 증원(안 제2조)
- 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별표 3)

1) 총 계: 615명 → 620명(증 5명)

2) 일반직: 613명 → 618명(증 5명)

○ 5급: 40명 → 41명(증 1명)

○ 6급 이하: 567명 → 571명(증 4명)

# 4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

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인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지역현 안 업무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 필요 인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